



제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비상대피 시 탈출방해행위 금지 〉

■ 이춘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273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이춘석의원 대표발의(2208273)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비상 대피 시 탈출 방해행위 금지(안 제23조 등)	2
가. 검토의견	3
나. 국토교통부 의견	4

□ 이춘석의원 대표발의(220827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춘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2. 19.
3. 회 부 일 : 2025. 2.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륙을 기다리고 있던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객과 승무원이 비상 탈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탈출 과정에 짐을 챙기려는 승객과 탈출하려는 승객이 엉켜 혼란스러웠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현행법은 승객의 협조의무로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 흡연, 전자기기 사용 및 폭행·협박·위계행위 등을 금지하고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상 탈출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긴급 상황의 발생으로 비상 대피가 필요한 때에 다른 승객의 탈출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승객의 협조의무로 명시함으로써 항공기 운항 및 승객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8호 및 제50조제2항제1호·제2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비상 대피 시 탈출 방해행위 금지(안 제23조 등)

현행	개정안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설></u>	8. <u>긴급 상황의 발생으로 비상 대피가 필요한 때에 다른 승객의 탈출을 방해하는 행위</u>
② ~ ⑨ (생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50조(벌칙) ① (생략)	제5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u> 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 ----- -----.
<u><신설></u>	1. <u>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긴급 상황의 발생으로 비상 대피가 필요한 때에 다른 승객의 탈출을 방해한 사람</u>
<u><신설></u>	2. <u>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항에서</u>

현행	개정안
③ ~ ⑨ (생략)	<u>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 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u> ③ ~ ⑨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지난 1월 김해국제공항에서 출발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항공기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탑승 중이던 176명이 비상탈출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음.

해당 사고에서 일부 승객이 개인 화물을 챙겨 나오며 다른 승객들의 대피를 방해하였다는 지적이 제기¹⁾되었는데, 이는 다른 승객들의 신속한 탈출을 방해하여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

1) 매일경제, “서로 캐리어 꺼내느라 아수라장”...에어부산 대피 현장 무질서가 화 키울 뻔, 2025.1.30.

<https://www.mk.co.kr/news/society/11229024>

“일부 승객은 캐리어까지 챙겨 나오며 다른 승객들 대피를 방해하는 행동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김인규 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장은 “항공기 화재 때 90초 내 탈출해야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90초 룰’이 있는데, 선반 위 짐을 찾으려 시간이 허비된다”며 “짐에 의해 본인이 다칠 수도 있고 슬라이드가 손상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2019년 78명 중 41명이 숨진 러시아 여객기 사고에서도 자기 짐을 찾던 승객으로 인해 참사가 빚어졌다. 이 승객의 좌석 뒤에 있던 승객 중에서는 단 3명만 살아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정안은 비상 대피 시 다른 승객의 탈출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같은 법에서 휴대 또는 탑재가 금지된 물건을 항공기에 휴대 또는 탑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휴대 또는 탑재하게 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거짓된 사실의 유포, 폭행, 협박 및 위계로써 공항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항공 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있음.²⁾

나. 국토교통부 의견

비상탈출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승객 협조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에 동의하고, 기내에 위해 물품을 반입하거나 공항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운항 중인 기내에서 폭언·고성방가 시

2) 참고. 항공보안법 상 벌칙조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처벌
수위도 적절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80

참고

항공보안법 상 벌칙조항

구분	위반 행위	형량
① 항공기 파손죄 (제39조)	· 운항 중인 항공기 파손 · 계류 중인 항공기 파손	·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7년 이하 징역
② 항공기 납치죄 (제40조)	· 폭행·협박 등으로 항공기 강탈 또는 운항 강제 · 제1항의 죄로써 사람의 사상 발생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사형 또는 무기징역
③ 항공시설 파손죄 (제41조)	· 운항 관련 시설의 파손, 조작방해 · 제1항의 죄로써 사람의 사상 발생	· 10년 이하 징역 ·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④ 항로 변경죄 (제42조)	· 위계·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 변경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⑤ 직무집행방해죄 (제43조)	· 폭행·협박·위계로 기장등의 직무집행 방해	· 10년 이하 징역
⑥ 항공기 위험물건 탑재죄(제44조)	· 금지물품 기내 탑재 또는 다른 사람 으로 하여금 휴대 또는 탑재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⑦ 공항운영 방해죄 (제45조)	· 거짓유포, 폭행, 협박, 위계로써 공항 운영을 방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⑧ 항공기내 폭행죄 (제46조)	· 항공기 보안,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 기기 조작 · 기내에서 폭행	- 10년 이하 징역 - 5년 이하 징역
⑨ 항공기 점거 및 농성죄(제47조)	· 항공기 점거 또는 기내 농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⑩ 운항 방해정보 제공죄(제48조)	· 운항방해 목적으로 거짓정보 제공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⑪ 벌칙(제49조)	·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위력으로 방해 · 조종실 출입기도, 기장등 지시 불이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⑫ 벌칙(제50조)	· 위·변조된 신분증명서 제시 · 보안검색/출입통제 요원 업무방해 또는 폭행 등 신체 위해 · 타인의 신분증명서 부정 사용 · 운항 중인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음주·약물 복용 후 타인 위해 · 계류 중인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음주·약물 복용 후 타인 위해 · 운항 중인 기내에서 흡연,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유발, 이착륙 도중 전자 기기 사용 ·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 타인 에게 성적 수치심 유발 · 허가 없이 보호구역 출입	- 10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2천만원 이하 벌금 - 1천만원 이하 벌금 - 5백만원 이하 벌금 - 1백만원 이하 벌금